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085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4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 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쉼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원시설로,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상담센터) 중구 마른대로 146, 7층  
(쉼 터) 성북구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생활가정 임대
  - 시설규모 : (상담센터) 288.19㎡, (쉼터) 137.26㎡

○ 주요시설

- (상담센터) 사무실, 상담실5, 교육장, 커뮤니티공간, 창고 및 탕비실1
- (쉼터) 총 2개호 / 각 호별(68.63㎡)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 인력운영 : 12명(센터장 1, 회계·행정1, 센터 상담원 6, 쉼터 상담원 4)

- ※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상시 상담언어 : 6개(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1.1.~ 2027.12.31.)

○ 위탁업무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다국어 전문상담(전화/온라인/대면/현장방문) 및 의료·법률·심리 지원 서비스 등 위기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센터 산하 ‘한울타리 쉼터’ 관리·운영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의식주 생활서비스, 이용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 847,681천원('25년 민간위탁금)

- 인건비 654,733천원, 사업비 124,504천원, 운영비 68,444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4.7.19.)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한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대사관, 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이주민지원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10011, 2024.6.25.)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변경 계획  
(다문화담당관-4227, 2024.10.21.)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시기(2024.12.31.)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3년간 위탁(2025.1.1.~ 2027.12.31.)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현황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폭력피해 등 위기에 놓인 서울시 거주 이주여성 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주여성과 동반자녀가 입소 가능한 긴급보호시설(한울타리 쉼터)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9월에 개관됨

####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 치 : 중구 마른내로 146(청일빌딩), 7층</li><li>▶ 사업내용 : 이주여성 대상 전문 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li><li>▶ 운영방식 : 민간위탁 (시설위탁,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li><li>▶ 운영인력 : 총 12명</li><li>▶ 시설 세부현황</li></ul>	
구 분	세부 현황
서울	· 위치 : 중구 마른내로 146(청일빌딩), 7층 (근무인력 : 8명, 센터장 포함)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 분	세부 현황
이주여성 상담센터	· 면적 : 288㎡, 상담실4, 교육실1, 커뮤니티실 · 운영시간 : 9시~18시, 전문상담 및 의료, 법률, 심리지원 등 · 지원언어 : 6개 (영어·중국·베트남·필리핀·몽골·한국어) *상주 언어
한울타리 쉼터	· 위치 : 성북구 소재(근무인력 4명) · 규모 : 다가구 주택 137.26㎡(68.63㎡ 2개호) · 이용기간 : 3개월(1회 연장가능, 최대 6개월)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 이용대상 :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최대 20명 수용) / 긴급보호·심리정서 등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다국어 전문상담 및 의료·법률·심리지원 서비스 등 위기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안정적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한울타리 쉼터’의 긴급보호서비스, 의식주 생활서비스, 이용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가정불화, 일반법률 등에 대한 1만 2,000여건 내외의 상담과 일평균 6.5명 이상의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주요성과 >

구분	상담 건수	상담·지원 내용									긴급보호 지원
		가정 불화	일반 법률	생활 문제	체류 문제	성폭력	의료 지원	쉼터 지원	심리 정서	기타	
2024년 (5월말)	5,156건	2,640	940	313	353	355	44	184	55	272	56명 (일평균 6.5명)
2023년	12,437건	5,334	2,536	1,389	717	733	555	493	323	357	136명 (일평균 7.2명)
2022년	12,341건	4,416	2,034	2,256	914	522	713	541	445	500	170 (일평균 8.0명)
2021년	11,608건	4,514	2,447	1,287	1,515	387	310	869	62	217	172 (일평균 12.0명)

- 한편 서울시는 당초 보조사업으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고, 개관부터 현재까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속적으로 수탁·운영하고 있음

###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사업추진 내역 〉

계약기간	수탁기관	협약 방식
2013.8.~ 2014.12.(1년 5개월)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지방보조사업
2015.1.~2017.12.(3년)		민간위탁(공모)
2018.1.~2020.12.(3년)		민간위탁(재계약)
2020.1.~2023.12.(3년)		민간위탁(공모)
2024.1.~2024.12.(1년)		민간위탁(재계약)

- 서울시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한울타리 쉼터’의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년간 민간위탁(재위탁)(2025.1.1.~2027. 12.31.)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임
- 한편, 서울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2021.4.개소)가 국비 보조사업임을 고려하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센터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부처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sup>2)</sup>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sup>3)</sup>에 근거하여 폭력피해 등 위기 이주여성에게 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음
- 그리고 이번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제4호<sup>4)</sup>에 따른 '재위탁'에 해당하는 바, 동의안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서울시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국비지원사업(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전환하고자 2023년에 1년 단기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국비 지원 시 운영방식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으로 제출된 민간위탁 기간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